

창원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단77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승

담당변호사 오유경, 문일환, 전명숙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4. 23.

판결 선고 2021. 5.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임차보증금, 대출금 잔액, 등기비용, 대출변제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2021. 3. 5.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는 1968. 5.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1.경 혼인생활이 파탄관계에 이르렀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1드단7523 이혼 등)를 제기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확정

피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2014. 2. 7.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3르821 이혼 등)이 다음과 같이 선고하고,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재산분할 판결'이라고 한다).

- ①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 ②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 ③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행 재산분할 판결에서는 분할해야 할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을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다.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창원시 성산구 C 대299.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C 부동산. 재산가액 6억 원(일치 진술)

②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C 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149,000, 000원(일치 진술) 및 이 사건 C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자 D단체에 대한 채무39,733,001원.

③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해서는 피고의 적극 · 소극 재산으로 인정한 내역이 없다

다. 선행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

선행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4. 7. 7. 원고의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 이 사건 C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2014. 7. 2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C 부동산과 관련한 분할협의를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1 이 사건 C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금 149,000,000원, 채권자 D단체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가 인수기로 한다(아래 이혼재산분할 대물정산 참조).

3 원고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서 명도를 이행한다.

4 원고는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기로 한다.

5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인하여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전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추후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혼재산분할 대물 정산

1. C 부동산 시가 600,000,000원

1 재산분할금 380,000,000원

2 보증금 149,000,000원

3 은행잔존채무 39,773,001원

합계 568,733,001원

적극재산 600,000,000원 - 소극재산 568,733,001 = 31,266,999원

2. 원고가 받아야 할 돈 31,266,999원에서 원고가 등기비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D 서산동 지점 잔액(2014. 7. 7. 현재) 11,781,203원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후 대출받아 변제하기로 한다.

즉 이 사건 C 부동산의 가액 600,000,000원에서 위 재산분할금 380,000,000원, 위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49,000,000원, 은행 잔존 채무 39,773,001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31,266,999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나, 그중 등기비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이를 감안한 대출 잔액 11,781,203원(31,266,999원 - 20,000,000원 = 11,266,999원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변제하여 대물변제 차액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및 확정

피고가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이후 원고는 2019.6. 19. 다시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2468호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선행 대여금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협약에 따라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 40,000,000원을 입금해주었고, 피고는 2014. 7.11. 임차인에게 위 마이너스 통장에서 6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재산분할 협약에서 원고가 등기비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 피고가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며 지출한 등기비용이 9,248,8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차액 10,751,200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2019. 10.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3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2019. 12. 1.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7, 8, 16,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C 부동산은 원고 소유였으나 혼인 기간 중 배우자였던 피고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C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그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 관리, 사용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C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역시 피고가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대출금 반환 채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시 이를 부동산 가액에 서 공제해서는 안 되었음에도 70세가 넘는 연로한 원고에 대해 선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피고의 강박과 기망, 원고의 착오로 인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 협의 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900여 만 원에 불과함에도 등기비용이 20,000,000원이라 기망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를 이와 같은 피고의 기망 내지 강박,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부당이득한 220,000,000원(임차보증금 149,000,000원, 대출잔액 39,733,001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20,000,000원, 대출변제금 11,266,999원1) 합계액이다)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C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계속 받아온 차임 중 이 사건소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11. 8.경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14. 7.경까지 4년(48개월)간 월 75만 원씩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3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혼인 기간 중 모든 돈 관리는 피고가 아닌 원고가 스스로 하였다.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차임, 대출금 역시 모두 원고가 수령하였을 뿐 피고가 사용한 바 없다. 선행 재산분할 판결에서도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대출금 채무는 모두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정리되었다.

선행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대출금 채무, 등기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추후 상대방에게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선행 대여금 소송에서 주장되었던 것으로 선행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거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소 중 임차보증금 149,000,000원, 대출잔액 39,733,001원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이러한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라면 유효하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들 및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1) 선행 재산분할 판결에서 이 사건 C 부동산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그리고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49,000,000원, 대출금 채무 39,733,001원을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8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2) 원고는 위 재산분할 지급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C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되,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대출금 상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3)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대출금 채무를 모두 언급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추후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대출금 채무는 재산분할 판결당시부터 서로 인지해왔던 것이고, 위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피고가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러한 자금들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에 모두 반영되어 선행 재산분할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피고의 적극재산도있었다) 분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5)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원고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당시 위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을 피고가 수령했는지 여부는 그 합의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니므로, 위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

(6) 그런데도 이 사건 C 부동산 가액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액과 대출금 채무액 등을 공제하여 나머지 잔액만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실제 피고에게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이후에 원고가 그 합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액과 대출금 채무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등기비용 20,000,000원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위 등기비용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은 위에서 본 재산분할 합의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서 역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이후 피고를 상대로 선행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등기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하였는데, 선행 대여금 소송에 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00.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등 참조).

위 등기비용 반환 청구 부분은 선행 대여금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선행 대여금 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등기비용 반환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다. 대출변제금 11,266,999원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원고가 대출변제금 11,266,999원을 청구하는 부분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C 부동산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 대출금 채무, 등기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11,266,999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의 위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본래 위 대출금채무는 피고가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대출변제금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 주장의 근거가 위 대출잔액 39,733,001원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동일하므로,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청구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라. 4년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차임을 직접 수령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반영된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바탕으로 선행 재산분할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명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임차보증금, 대출잔액, 등기비용, 대출변제금에 관한 부당이 득반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분할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원)	증거
원고	적극재산	1	창원시 성산구 E상가	350,000,000	제1심 법원의 시가 감정결과, 일치진술
		2	F에 대한 대여금	109,200,000	물12호증, 일치진술
			소계	459,200,000	
	소극재산	1	위 E상가 임대차보증금	75,000,000	갑9호증, 일치진술
			소계	75,000,000	
	원고의 순 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384,200,000	
피고	적극재산	1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호	1,001,000,000	제1심 법원의 시가 감정결과, 일치진술
		2	창원시 성산구 C 토지 및 건물	600,000,000	일치진술
			소계	1,601,000,000	
	소극재산	1	위 G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	갑7호증, 일치진술
		2	위 C 주택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49,000,000	갑8호증, 일치진술
		3	D단체에 대한 채무	39,733,001	갑12호증의3, D단체 서상동지점에 대한 제출영령 결과
			소계	288,733,001	
	피고의 순 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1,312,266,999	
원, 피고의 순 재산 합계			1,696,466,999		

1) 본래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갚아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기망, 강박하여 원고의 채무인 것을 전제로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했으므로 대출변제금 11,266,999원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C 부동산 가액 600,0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149,000,000원, 대출잔액 39,733,001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20,000,000원, 대출변제금 11,266,999원을 공제하면 잔액이 220,000,000원으로서 이를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계산하면 잔액은 380,000,000원이 된다. 원고의 소장, 2020. 11.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등 기존의 원고 주장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C 부동산 가액에서 원고가 부담했던 재산분할금 3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20,000,000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